



| | |
|------|------------|
| 문서번호 | 안전치수과-2714 |
| 결재일자 | 2015.2.17. |
| 공개여부 | 대시민공개 |
| 방침번호 | |

| | | | | |
|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|--|
| 주무관 | 도시안전팀장 | 안전치수과장 | 안전건설교통국장 | |
| 박병민 | 소순면 | 지세진 | 02/17 代김유식 | |
| 협조 | | | | |

2015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관리 계획

2015. 2.



성 동 구
(안전치수과)

2015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관리 계획

특정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시설물의 재난발생 위험성 제거 및 안전점검을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함

I. 추진배경

□ 관련근거

-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
 - 재난 발생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계획·시행 및 안전점검 실시
- UN 방재안전도시 인증 추진계획(안전치수과-24773, 2014.12.2.)

□ 지정현황

- 특정관리대상: 총 643개소

| 점검대상 | 중점관리대상 | | | | 재난위험시설 | |
|------|--------|-----|-----|-----|--------|---|
| | 소계 | A | B | C | D | E |
| 643 | 624 | 256 | 240 | 128 | 19 | 0 |

* D등급: 축대·옹벽 2, 담장2, 주택2, 대형 건축공사장 13

II. 추진방향

□ 재난위험 시설 해소 적극 추진

- 공공시설은 시설관리부서, 민간시설은 소유자가 해소
시설관리부서에서는 재난위험시설별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 마련

□ 시설 안전점검 실시

- 시설 관리부서에서는 소관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해 정기안전점검 및 취약시기
수시 안전점검 실시

Ⅲ.

재난위험 시설 해소 적극추진

□ 재난위험시설 조치사항

- 안전등급 평가 결과 D, E등급으로 산정된 경우 정밀안전진단 실시
 - 민간시설은 소유자에게 정밀 안전진단 요구
-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 발견시 재난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사용제한·금지 등 응급조치
 - 공공시설: 재난관리기금 또는 예비비 등을 활용하여 긴급 보수·보강조치
 - 민간시설: 소유자에게 안전조치 명령(정밀안전진단의 실시, 보수·보강 등 정비, 재난을 발생시킬 위험요인의 제거 등)
- 시설별 관리책임자 지정(A·B·C등급: 2명, D·E등급: 3명) -- 시설관리부서
- 재난위험시설 고시 및 안내표지 설치 --- 시설관리부서
 - 재난위험 시설을 지정하거나 해제시 구보 또는 인터넷에 14일 이상 고시
 - 위험요소, 사용금지·제한내용, 재난관리책임기관, 안전점검 책임자 및 연락전화번호 등이 포함된 안내표지판 설치
(단, 건설공사장에 대해서는 고시 및 안내표지 설치 제외)
- 보수·보강, 개축 등 위험요인 해소대책 마련 --- 시설관리부서
- 재난위험 시설 현황(D등급) (2015.2.17. 현재)

| 연번 | 유형 | 위 치 | 해소방안 | 비 고 |
|----|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|
| 1 | 주택 | 행당동 100-4 | 철거 | 행당6구역 재개발 |
| 2 | 담장 | 금호동1가 600-1 | 철거 | 금호15구역 재개발 |
| 3 | 주택 | 금호동2가 501-40 | 철거 | 금호16구역 재개발 |
| 4 | 축대 | 금호동2가 501-40 | 철거 | 금호16구역 재개발 |
| 5 | 석축 | 금호동3가1344-11 | 보수보강 | 금호16구역 재개발 |
| 6 | 담장 | 성수동 656-1267 부용연립 | 철거, 재설치 | 성수1구역 재건축 |

IV.

시설물 안전점검

□ 점검반 구성

- 점검총괄: 안전치수과
- 점검부서: 시설물 관리부서
- 합동점검반 운영
 - 재난위험 시설은 한국건설관리공사, 안전관리자문단 등과 합동 점검을 실시

□ 점검실시

- 정기안전점검
 - A~C등급/반기 1회, D등급/월1회, E등급/월2회 이상
- 수시안전점검
 - 재난취약계절별(해빙기, 행락철, 하계휴가철, 동절기대비 등)

<계절별 점검일정>

| 계절별 | 중점점검대상 | 추진일정 |
|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|
| 해빙기 | - 축대·옹벽, 절개지, 건설공사장 등 재난위험시설 - 기타 해빙기 지반침하 및 붕괴우려 시설 | 1 ~3 월 |
| 봄·가을철 (행락철) | - 집회, 관람시설, 종교시설, 어린이공원, 대형목욕탕, 공동주택 어린이 놀이시설 | 4~5월, 9~10월 |
| 여름철 (물놀이) | - 여름철 물놀이 취약지역(하천 등) | 6~8월 |
| 겨울철 (동절기) | - 다중운집이 예상되는 복합영상관, 전통시장 등 - 야외 난방시설을 사용하는 소매시장 등 판매시설 - 가스충전소, 화학제품 제조공장 등 위험물시설 - 대형판매시장 등 연말 다중이용업인 위락·휴게 시설 | 11월~익년 2월 |

- 점검결과 지적사항은 정비완료시까지 관리
 - 『재난관리시스템』에 점검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입력

시설별 안전관리 계획 수립

- 시설 관리부서에서는 소관 특정관리대상 시설의 재난발생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·시행하고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
 - 시설물관리부서별 실정에 맞는 세부 추진계획 수립 : 2015. 2월
- 시설물 관리부서 자체 안전점검결과 제출(붙임2 서식)
 - 상반기(1월~ 6월) 점검결과 : 2015. 6. 30까지
 - 하반기(7월~11월) 점검결과 : 2015. 11. 30까지

 재난관리시스템 교육

- 2015년 상반기 인사발령에 따른 특정관리시설물 담당자 교육(3월 중)

- 붙임 1. 안전점검결과 보고서 작성양식 1부
2. 월별 점검대상 및 중점 점검내용 1부. 끝.